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요즘음 외채절감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채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또 현재 경기도 안정적 호황국면이며, 다만 일부 국민들의 사치성 소비풍조가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외채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일 품목으로는 원유다음에 사료용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 가운데 두번째로 액수가 많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몸둘바를 몰랐다. 마치 사료공장과 양축가가 정부의 큰 특혜하에서 대량의 외화를 사용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식을 일반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해서이다.

사실 정부가 외국 빛이 너무 많아 갚을 길이 막연하니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축산업계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규모를 줄이든가 무슨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빛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또 축산업은 손수건, 이쑤시개 등과 달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코브라, 지렁이, 우렁이나 커피 등 기호식품과도 구별되며 필수식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부득이 외화는 사용하지만 금지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축산업은 이제 국민총생산(GNP)의 5% 정도의 수준으로 비중이 커졌고 고용효과는 물론 축산자체보다도 연관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농축산업 다시말해서 농촌의 안정이 정치·사회 안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축산인은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는 것이다. 이는 EC 여러나라들이 지나칠 정도로 농축산물의 가격보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으며, 일본의 미국정책을 포함한 농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축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우리정부도 우선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

료를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수입 옥수수에 안정기준가격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 운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내용을 양축가들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양축가들의 불만이 많았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으며, 남은 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기금을 부담한 양축가들은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해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법률, 공문, 발표문, 계획서 등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많다. 최종 집행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법이 집행될 때가 많다. 문제의 해결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대개의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한다기 보다는 그저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는 의연하게 라는 단어중에서 가장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또 문제의 성질에 따라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일치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식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상 몇가지 단어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느냐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이러한 목적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제시는 생략되고 단지 '만전을 기하라' 또는 적극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기 바람' 등으로 통한다. 알아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다. 생산자들과 구체적인 대화가 없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알게되면 일의 추진에 잡음만 생기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트(Richard Rutt)는 한국문화를 직관사고의 추상문화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인은 분석보다유추를 좋아하며 문장도 여운을 남겨 상상으로 메우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저 양축가들은 왜 돈을 내며 그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보다는 상상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상상의 날개는 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양축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외채와 국산보리 재고문제와 양특적자가 어떻고 하며 국산보리가 배합사료에 사용되었는데,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주정원료 등 공업원료로만 사용토록 할 것이며 그쪽은 세제를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양축가들도 대체로 납득하고 협조하였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금년에 (소식통에 의하면) 약 30여만t의 국산보리가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리라고 한다. 국산보리는 배합사료에 1% 사용하면 가격도 1% 상승한다고 하며 30만t을 사용할 경우 약 6백 억원을 양축가가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86·88의 큰 행사를 앞두고 상품의 고급화, 유통구조의 개선, 생산설비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 양계업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형성이 빈약한 축산업계가 6백여억원을 추가부담 한다면 축산업계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는 도시 상업자본의 축산업계 진출길을 열어주어 기존 양축가들이 설 땅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양축가들과 아무런 대화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축가들은 왜 이런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상상력과 눈치를 동원할수 밖에 없게 된다. 양축가들과 대화를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여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경우 졸속에 치우쳐 양축가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과중한 양축가 부담으로 산업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경험하였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후 일을 추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을 누가 반대할수 있으며 환율의 안정을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의 원인을 지나친 물가안정과 환율고정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목적이 좋다고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에 세율을 낮추어 주면서 까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보아 왔다. 외채절약과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반대할 양축가는 없지만 지금까지처럼 모든 축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6백억원의 추가 부담은 업계를 더욱 황폐화할 뿐이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 보리를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명분도 이제는 퇴색되어가고 있다. 많은 시험연구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보리를 배합사료 원료로 사



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으며 청예로 베어서 대가축에 직접 먹이는 것이 영양분의 손실도 적고 경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료가격 안정기금이 없는 마당에서 외화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국산보리 사용량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외화도 절약한다는 정책은 재검토할 때가 된것 같다.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며 업계의 산경험을 정책이 수렴할수 있을 것이다. 외화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민필수식품 생산원자재 수입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하며, 우리의 수출 대상 국가들이 우리에게 수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로 축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미국은 농축산물을, 호주는 쇠고기·양고기·낙농제품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닭고기와 사료원료를, EC는 낙농제품을 사가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업계는 메탈라가고 축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압력이 높아가는 이때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無石無彈 無彈無石

5월16일부터 특급도계장에서 처리한 도계품만을 타시도에 반출케 하려던 계획을 특급도계장의 부족과 여건 등이 성숙되지 않아 9월 16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사실은 계몽기간이며 군납가공원료 업소용 등은 Box포장도 가능케 하였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양계업자에게는 도계법으로 알려져 있다)이 개정되어 도계장을 특급도계장과 일반도계장으로 구분하여 일반도계장은 사실상 사업이 안되도록 하였다.

왜 이렇게 개정하였는지 양축가는 몰라도 되겠지만 제 2의 도계과동이 오지 않을까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과거에도 당국에서는 처리능력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마라는 발표를 수없이 하여 왔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축가들은 지난번에도 걱정이 되어서 농수산부, 서울시, 경기도의 담당관들을 모시고 도계유통 변화에 따른 회의까지 한바 있었다. 그날 회의 내용은 요약해서 5월호에 게재한바 있다. 생산자들의 시설부족 걱정에 경기도 당국자의 충분하다는 자신에 찬 답변과 농수산부 당국의 도계품 품질향상의 필요성이 강조된 회의이었다. 같은 업계를 보는데 생산자와 당국의 견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업계 발전을 위해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불행이라고 소리를 높이는데 반해서 정부는 안정적 호황국면이라고 보는 것처럼 양계업계도 정부당국과 보는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화가 말로는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적십자 회담을 보고 새삼 느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대동강에는 물고기보다 낚시꾼이 많다는 식의 답변을 하니 대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생산자들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분하다는 공방은 76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 無石無彈에 無彈無石은 대화가 아니다.

용산에 국제상사에서 사육을 지었는데 같은 빌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다르게 보인다. 또 시간에 따라 아침과 점심 저녁에 보는 건물이 각기 다르다. 오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만 보고 속단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다음으로 86·88을 앞두고 위생적인 도계처리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누가 도계품의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필요성이 곧 가능성이 아니며 가능성이 곧 현실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예를 보면 왜그리 서둘렀는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담당자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니 열등한 사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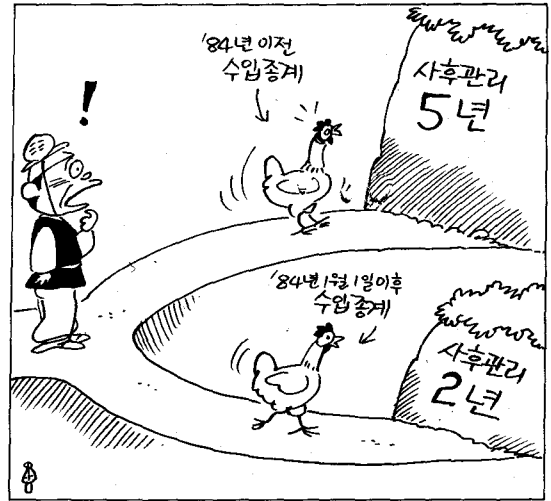
매달려 더욱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처리를 하게 되고, 일이 안되면 화를 내고 정부의 권위를 내세워 강행하게 된다.

그간 법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고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뜻으로 지킬수 없는 법들을 관용으로 묵인하다가 갑자기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법의 집행에 일관성이 없어 그저 요행을 바라게 된다. 이런 경우는 획일적인 시설기준이나 공해방지 등에서 또는 포장 냉각처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너죽고 나죽자는 극단적 자폭정신으로 업자 상호간 또는 관과 업자간에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 될수 있는대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를 실현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에 3개월 실기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근본 원인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축가의 불안은 3개월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아이가 울때 왜우나를 생각치 않고 덮어놓고 사탕만 주면 그 아이는 언제 자립할수 있을까?

지난 좌담회후 법을 믿고 입식을 조절하고 출하를 조절한 선의의 브로일러업자에 경제적 정실적 손실은 없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계나 종돈은 관세법 제28조의 3, 2항에 의하여 5년이내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관세청의 용도의 사용치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은 관세청고시 제84-370호(84. 5. 3일)의 관세법 제28조 제 3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물품 용도와 사용금지 기간 등 지정고시에 의하여 수입 면허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본문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동고시의 부칙에 보면 이 고시는 84년 5월 3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2항의 적용특례로 법률 제3666호 관세법 시행이후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수입 신고된 감면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법률 제3666호가 시행되는 84년 1월1일부터 수입된 종계 종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2년간 받지만 그 이전에 수입된 종계-종돈은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된다.

혹시 착각하여 84년 1월1일 이전에 관세를 감면받은 종계나 종돈을 2년이 지났다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2항 제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부가가치세도 감면을 받는다. *

수입종계 및 종돈의 사후관리 기간

종계나 종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법 제28조의 6 제 1항 제 7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10%에 해당되는 관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받는 종